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임차 소요 경비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3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우재준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5.
3. 회부연월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소방 헬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8조제2항 신설), 구입·임차한 소방장비 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도 및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생략)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소방 헬기 등 소방장비를 구입·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소방 장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2025년 3월 21일~30일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은 187명의 인명 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와 약 1조 818억원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고, 103,876천 헥타르(ha)의 산림 피해를 동반함.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산림 피해 현황]

구 분	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의성 (3.22.~28.)	안동 (3.22.~28.)	청송 (3.22.~28.)	영양 (3.22.~28.)	영덕 (3.22.~28.)	산청·하동 (3.21.~30.)	울주 (3.21.~27.)
피해면적(ha)	103,876	28,853	26,709	20,655	6,864	16,208	3,397	1,190

(자료 : 산림청)

초대형 산불과 같이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헬기를 비롯한 소방장비를 적시에 투입하여 산불의 확산 경로를 차단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주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소방청에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불 대응 위주의 소방장비는 산불전문진화차(233대), 소방헬기(32대)¹⁾, 소방펌프차량(2,981대), 비상소화장치(2,807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1) 참고로, 소방헬기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86대(2026.1월 기준)의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소방헬기는 「소방관리장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기동장비의 일종으로서 소방장비에 해당하는 반면, 산불진화헬기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규칙에 따른 항공진화장비로서 산불 진화 장비에 해당함.

[산불 대응 위주의 소방장비 현황]

구분	산불전문진화차 (233대)	소방헬기 (32대)	소방펌프차량 (2,981대)	비상소화장치 (2,807개소)
운영 규모	대형 58대 소형 175대	대형 4대 중형 28대	펌프차 2,103대 물탱크 878대	강원 1,852, 경북 434, 타 시도 521개소
제원	• 물탱크 용량 - 대형 : 3,000ℓ - 소형 : 700ℓ • 폼탱크 용량 - 대형 : 200ℓ - 소형 : 없음	• 대형헬기 : 28명 탑승 - 담수능력 : 4,000ℓ - 항속거리 : 925km • 중형헬기 : 14명 탑승 - 담수능력 : 2,000ℓ - 운항거리 : 555km	• 펌프차 - 소형 : 2,800ℓ 미만 - 중형 : 4,500ℓ 미만 - 대형 : 4,500ℓ 이상 • 물탱크차 : 소형 4,500 ~ 대형 12,000ℓ 이상	• 구성품 : 호스릴(100m), 관창, 수벽노즐 등 • 1개소 설치비용 - (소화전 기설치) 6백만원 - (소화전 미설치) 15백만원
참고 사항	• (대형) 주행 중 방수 최대등판 45도 최대도강 1.2m • (소형) 좁은 도로 진입가능 및 잔불진화에 효과적 	• (다목적 소방활동) - 산불진화 - 산악수난·구조 - 응급환자 이송 - 대형재난 공중출동 등 	• (펌프차) 방수를 주력으로하는 소방차 • (물탱크차) 물 공급이 주목적인 소방차 • (화학차) 유류화재 등 진압(폼, 호스릴 등) 	• (활용사례) - '22년 경북·강원 산불 주택 248채 방어 - '23년 강릉 야산 주택 화재 초기진압, 제2의 강릉산불 저지 

(자료 : 소방청) ※ 시·도별 보유 현황은 10페이지 참고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의 구입·임차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임차를 통해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 역량 감소를 방지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다른 법률의 규정과의 중복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에 관하여 국가에서 시·도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²⁾.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9조는 국가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기본적·선언적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현재도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사업 등 다양한 재정 수단을 통해 소방장비의 구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1-2025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 비용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국비보조사업	그외 국비지원
2021년	244,165	18,495	8,317	559
2022년	220,569	27,572	8,966	296
2023년	215,593	29,072	13,305	454
2024년	208,535	16,936	538	331
2025년	237,573	23,112	3,283	205

(자료 : 소방청)

- 2)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 가. 소방자동차
 -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소방장비관리법」에서는 소방장비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동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음³⁾.

따라서,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임차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에 대한 지도 및 실태점검과 관련된 내용 및 취지를 「소방기본법」 및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보임⁴⁾.

둘째, 소방장비의 구입·임차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활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임⁵⁾.

3) 「소방장비관리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참고로, 소방장비는 아니지만 산불진화헬기를 상정하는 경우에도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정기적 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산불 예방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 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2021-2025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액	10,352	8,853	9,866	8,325	9,856
서울	411	322	380	382	439
부산	488	444	508	387	499
대구	417	337	377	339	385
인천	451	397	468	361	426
광주	353	291	264	249	282
대전	313	219	287	253	302
울산	326	251	307	272	368
세종	155	137	169	136	160
경기	1,344	1,124	1,343	1,134	1,379
강원	807	706	755	642	725
충북	561	495	564	453	598
충남	785	713	811	655	778
전북	675	580	557	485	593
전남	951	808	860	719	878
경북	1,031	900	951	809	748
경남	945	834	917	768	951
제주	339	295	350	281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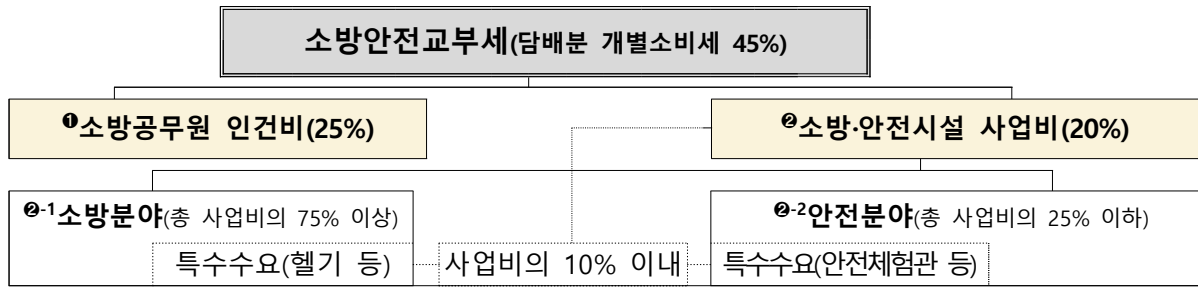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결정되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 및 안전시설 사업비로 배정하는데, 동 사업비 중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교부하고 있음⁶⁾.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6)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대상사업에 대한 상세는 11페이지 참고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방헬기와 같은 특수한 수요의 경우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별도로 수요를 받아 교부세를 배정하고 있는데, 2021-2025년 동안 13개 시·도에 대해 총 1,361억원 규모의 헬기 구입·임차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7).

[2021-2025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소방헬기 구입·임차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입 ※ ()는 지원완료 연도	소계	281	256	268	235	308
	전남('21)	46				
	전북('22)	35	46			
	광주('22)	35	46			
	경남('22)	50				
	부산('23)	28	35	52		
	인천('23)	29	35	51		
	경북('24)	29	35		51	
	강원('27)	29	35	10	36	5
	충남('24)		24	45	27	19
	경기('25)			110	78	112
	서울('27)				43	52
	울산('28)					60
	충북('28)					60
임차	소계			10		3.4
	강원			10		3.4

(자료 : 행정안전부)

7) 참고로, 산불진화헬기 임차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가 아닌 ‘안전분야’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23년에 전북(4.1억원)·경남(12.7억원), 2024년에 대구(4억원)·충북(2.7억원)·전북(7.8억원)·경남(12.8억원)을 대상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 지원 목적의 교부가 이루어진 바 있음.

따라서,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의 수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의 구입·임차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를 포함한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이미 교부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별도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반면, 관계부처인 소방청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소방기본법」과 「소방장비 관리법」에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참고

시·도별 소방헬기·소방펌프차·산불전문진화차 보유 현황

(단위 : 대)

시·도	계	소방 헬기	일반소방펌프차					산불전문진화차		
			소계	소형	중형	대형	물탱크	소계	소형	대형
계	3,246	32	2,981	419	1,642	42	878	233	175	58
중구본	24	8	16	4	6	1	5			
서울	228	3	224	39	82		103	1		1
부산	152	2	149	10	79		60	1		1
대구	130	2	124	7	69		48	4	1	3
인천	138	2	125	15	58	2	50	11	11	
광주	64	1	62	2	50		10	1		1
대전	48	1	45	6	31	2	6	2		2
울산	62	1	61	7	35	1	18			
세종	27		26	5	14	1	6	1		1
경기	539	3	528	52	301		175	8	3	5
강원	219	2	199		153		46	18		18
충북	151	1	147	29	80	9	29	3		3
충남	297	1	273	85	125	5	58	23	19	4
전북	160	1	146	10	104		32	13	12	1
전남	297	1	262	53	151	16	42	34	33	1
경북	341	1	262	76	107	5	74	78	64	14
경남	254	1	220	15	130		75	33	32	1
제주	65	1	63	4	36		23	1		1
창원	50		49		31		18	1		1

(자료 : 소방청)

참고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대상사업

분야	부문	사업명	대상사업
중점 사업 (10)	소방 시설 확충 (8)	기동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기동장비의 구입(소방헬기의 임차 포함)
		보호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보호장비의 구입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에 따른 호흡보호장비 충전실 및 정비실의 구축·보강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장비의 구입
		구조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조장비의 구입
		구급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급장비의 구입
		화재진압 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구입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
		측정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측정장비의 구입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의 구입
		보조장비 교체·보강	▶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따른 보조장비의 구입
	소방 안전 관리 강화 (2)	소방출동로 확보	▶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 제어시스템(신호등 및 신호제어기 포함)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설치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강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신보건을 위한 시설·장비의 구축, 보건안전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동 규정 제24조에 따른 유해물질 차단시설 구축 ▶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에 따른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재량 사업 (7)	소방 시설 확충 (4)	소방교육기관 시설·장비 보강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6조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구축 및 장비의 구입(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기준 참조)
		노후 소방 관서 개선	▶ 「소방기본법」 제3조의 소방기관의 청사 중 노후소방관서 개선사업(부지매입비 제외)
		긴급구조 시스템 및 장비 확충·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전산시설의 확충 및 긴급구조기관에 설치하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및 교체
		긴급구조 통제단 장비 확충·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및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현장지휘소의 시설 구축 및 장비의 구입
	소방 안전 관리 강화 (3)	재난대응 역량강화 소방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훈련 중 관계기관 합동훈련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소방훈련
		소방안전 교육·훈련	▶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대원 교육·훈련 및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홍보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장비의 구입 ▶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체험시설 구축 및 콘텐츠 구현
		소방장비의 세척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의뢰

(자료 : 행정안전부)